

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공시송달 공고

행정대집행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0. 12. 24.

문 경 시 장



1. 제 목 : (주)리뉴에코에너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

2. 관련근거

가. 처분근거 : 행정대집행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9조

나. 공시송달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공고기간 : 2020. 12. 24. ~ 2021. 1. 15.(23일간)

4. 대 상 자

사업장명 (대표자)	소 재 지	처분내역	사유
(주)리뉴에코에너지 (장송섭)	경북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-18	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	폐문

5. 공시송달내용

가.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에 따라 2019년 8월 12일(제2019-1호) 영장통지하고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

○ 납부 명령 내역

납부자	성명	(주)리뉴에코에너지	
	주소	경북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-18	
납부금액	총액		명세
	금 7,689,774,510원 (금칠십육억팔천구백칠십칠만사천오백십원)		방치폐기물 34,187톤 처리비용 (행정대집행 비용)

나.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6조에 따른 「국세징수법」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.

다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라. 아울러, 잔여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가 비용에 대하여 납부 명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6. 문의처 : 문경시 환경보호과(☎054-550-6193)